

2024 년 2 월 1 일

러시아 제재 업데이트

본 회람을 통해 영국, 유럽연합 및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의 최근 주요 진행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가격 상한제

러시아산 CN 2709 와 CN 2710 화물의 운송 및 보험을 규정하는 가격 상한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3 년 2 월 9 일자 Price Cap Circula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명(Attestation)의 유지와 공유는, 가격 상한 제도가 도입된 이후부터 준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증명 모델에 대한 변경 사항이 발표 되었습니다.

G7, 호주 및 유럽연합으로 구성된 가격 상한제 연합은 [Statement of Updates to the Price Cap Rules](#) 를 발표하였습니다. 변경된 사항은, 가격 상한제의 이행을 지원하고, 악의적인 행위자가 불투명한 운송 비용을 이용 하여 상한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구입한 유류를 위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줄임으로써, 우회를 방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2024 년 2 월 19 일(영국과 미국) 및 2024 년 2 월 20 일 (유럽연합) 이후에 선적된 화물에 대해 발효됩니다.

두가지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차 단위별로 증명 제공**이 요구됩니다. 연간 단위별 증명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화물이 STS 를 통해 다른 선박으로 이송되는 경우, 추가 증명이 요구되는 새로운 항차로 여겨집니다.

항차별 증명은 아래와 같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 선주가 용선자 또는 기타 계약 당사자로부터 받는 증명은 선적 전에 받아야 합니다. 이는 미국의 지침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선주는, 선적 전에 증명을 받지 않는 한, 화물이 이미 선적될 때까지 가격 상한제를 준수한다는 확신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유럽연합의 지침에서는

“선주는 고객이 제공한 증명에 의존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도록 필요한 주의를 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 선주가 P&I Club 에 제공해야 하는 증명은 선적 후 30 일 이내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증명이 제공되지 않으면, 담보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부수적 비용에 대한 항목별 가격 정보**는, 가격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당사자가 기록한 다음, 요청 시에 선주 및 P&I Club 에 제공해야 합니다. 선주는 30 일 이내에 부수적인 비용 정보에 대한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Member 는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계약에 적절한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Member 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Member 가 Club 에 대한 정보 의무 이행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며, 잠재적으로 P&I 담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P&I Club 은, 선주가 이러한 정보를 구득하고 P&I Club 과 공유한다는 것을 보장해야 합니다. EU Regulation 833/2014 는, 요청 시에 서비스 제공자가 항목별 가격 정보에 대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Member 는 P&I Club 및 기타 서비스 제공업자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30 일 보다 훨씬 짧은 기간 내에 이러한 정보에 대한 권리 보장을 감안해야 합니다.

영국 및 유럽연합의 지침에 명시된 대로 기록하고 공유해야 할 항목별 부수적 비용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운임 및 보험료 포함 가격조건(CIF) 계약의 경우

- *비용* : 수출 면허, 제품 검사, 판매자의 항구에서의 화물 선적 비용, 포장 비용, 통관 비용, 관세 및 세금, 화물 손상 또는 파손에 대한 배상, 선적지/수출지에서의 항만사용료 및 항만 서비스비용
- *보험* : 구매자의 상품이 목적지 항구에서 인도될 때까지의 보험료
- *운임* : 판매자의 항구에서 구매자의 목적지 항구까지 해상 또는 수로를 통한 운송료
- *기타 비용* : General License 를 준수하고 거래가 합법적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기타 비용 (EU FAQs 에서는 이러한 비용이 “Ship-To-Ship 이송을 위한 부수적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비용”도 포함됨을 첨언하고 있습니다)

본선 인도 가격조건(FOB) 계약의 경우

- *비용 : 수출 품목의 포장 비용, 제품 적재 및 판매자의 항구로의 운송에 대한 모든 비용, 수출세, 관세, 선박으로의 제품 선적과 관련된 모든 운송, 취급 및 선적 비용*

Member 는, 제공된 증명과 기타 비용 정보에 의존할 수 있도록, 제공된 정보의 신뢰성 및 정확성에 대한 적절한 주의를 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상한제 유류 운송에 관여하는 당사자는 원래 3 개의 “Tier” 중 하나에 해당되어 있으며, 선주와 P&I Club 이 포함된 Tier 3 은 화물 가격의 정보를 직접 접근할 수 없는 당사자입니다. 영국과 유럽연합은 Tier 3 을 Tier 3A 와 Tier 3B 로 분리하였습니다. Tier 3A 에는 P&I Club, 선체보험자, 적하 보험자, 보험중개사, 선주 및 선박관리회사가 포함됩니다. Tier 3B 에는 재보험자와 일반 금융편의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해당됩니다. 영국과 유럽연합의 지침에 명시된 증명 모델의 변경 사항은 Tier 3B 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구되는 증명서 양식 및 Club 의 담보

상기의 변경 사항은 2024/2025 보험연도에 대해 본 회람에 별첨된 Annex A 양식으로 항차별 증명이 요구됨을 의미합니다.

가입 선박이 러시아산 유류 또는 석유제품의 운송에 관여하는 경우에 Club 의 지원을 받기 위해, Member 는:

- (1) Annex A 양식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 (2) SPIRE Report 에 향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2022년 5월 19일자 Circular](#) 참조) Member 는, 화물이 무엇이든 러시아 항구에 입항 또는 러시아 해역을 통항한 후, 이러한 정보를 Club 에 제공해야 함을 상기해야 합니다.

상기의 정보와 문서가 제출되면, Club 은 검토 및 Member 에게 추가 또는 명확한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본 회람에서 언급된 부수적 비용에 대한 항목별 가격 정보에 대한 요청이 포함될 수 있으며, Member 가 이러한 정보를 Club 에 제공하지 않으면 담보 제공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Club 이 가격 상한 제도의 요구사항 준수 또는 관련 당국의 요구에 응답할 만큼의 충분히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

Member 는 항목별 가격 정보에 대한 요청을 받게 될 것입니다. Club 이 충분히 확신하지 못할 수 있는 이유에, 거래 당사자에 대한 우려, Club 자체의 실사에서 발생하는 우려 또는 (공개 출처 보고서 또는 관련 당국으로부터의 요구에 의해) 위반 의심 정보를 받는 경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U Regulation 에 “해당 당국이 가격 상한 제도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급망 내 위치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모든 행위자에게 [항목별 가격]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Member 는, 가격 상한 제도의 준수를 먼저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Club 이 지원 제공이 지연될 수 있음을 예상해야 합니다.

유럽연합의 제 12 차 제재안

유럽연합은 2023 년 12 월 18 일에 러시아에 대한 제 12 차 제재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상기에 명시된 가격 상한 제도의 변경 사항 외에도, 제 12 차 제재안에서의 해운 산업에 대한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탱커 매각에 대한 통지 – 탱커의 소유권을 러시아인에게 매각 또는 이전하거나 러시아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금지 외에도, 탱커가 제 3 국의 기업에 매각되는 경우, 유럽연합은 탱커 매각에 대한 통지 요구사항을 보다 보편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Regulation 833/2014 의 Article 3q(4)에 “회원국의 국민, 회원국에 거주하는 자연인 및 연합 내에 설립된 법인이나 기구에서 Annex XXV 에 열거된 원유나 석유제품의 운송을 위해 제 3 국으로 탱커의 소유권 이전을 수반한 매각이, Paragraph 1 에 따라 금지된 매각 또는 기타의 소유권 이전을 제외하고, HS Code ex 8901 20 에 해당된다면, 탱커의 소유자가 시민 또는 거주자로 속해 있거나 설립되어 있는 회원국의 해당 당국에 즉시 통지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지 요건은 소급 적용되어, 2022 년 12 월 5 일 부터 2023 년 12 월 19 일 까지의 모든 매각에 대해 2024 년 2 월 20 일 이전에 통지되어야 합니다. 2023 년 12 월 19 일 이후의 매각은 즉시 통지되어야 합니다.
- 제 3 국에서 가공된 러시아산 다이아몬드와 러시아에서 생산, 수출 또는 러시아를 경유하는 다이아몬드의 직 · 간접적인 수입, 구매 또는 이전에 대한 금지 – 러시아산 다이아몬드에 관한 금지는 2024 년 1 월 1 일부터 적용되며, 제 3 국에서 가공된 러시아산 다이아몬드에 관한 금지는 2024 년 3 월 1 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2024 년 9 월 1 일에 전면 금지됩니다.

- 선철, 구리 및 알루미늄선, 포일 튜브 및 파이프와 같이 러시아에 상당한 수익을 창출해 주는 제품의 수입에 대한 추가 제한 (대부분의 대상 금속 제품에 대하여, 2023년 12월 19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에 2024년 3월 20일까지 단계적 축소)
- 액화석유가스의 수입 금지 – 2023년 12월 19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에 2024년 12월 20일까지 단계적 축소
- 민군 겸용 물품 및 기술에 대한 수출 제한 강화
- 러시아로 특정 민감한 상품 및 기술의 재수출을 계약상 금지해야 하는 수출자의 의무 (2023년 12월 19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에 2024년 12월 20일 또는 만료일 중에 빠른 날짜까지 단계적 축소) – 관련 상품은 Common High Priority List에 있는 항공, 제트 연료, 총기 및 제품과 관련된 것입니다.
- 140개 이상의 법인 및 개인에 대한 추가 지정

러시아산 연료유 공급

유럽연합은 FAQ 18a의 “유럽연합의 선박이 러시아산 석유제품을 연료유로 넣는 것이 금지됩니까?”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이탤릭체로 된 문구를 추가하여 입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러시아에서의 연료유 구매가 필수적인 경우에 한하여, (Article 3m Paragraph 9) 유럽연합의 선박이 러시아에서 러시아산 석유제품을 연료유로 넣는 것은 가능하며, *항해를 계속하는 Tanker의 운항을 위한 연료유 공급을 의미합니다.*”

FAQ에서는 계속 항해하는 “탱커”의 운항에 필요하다면 연료유 공급이 가능하다고 언급했지만, “유류 가격 상한제”의 FAQs에 대한 업데이트의 맥락에서, 모든 선종에 대해 입장이 동일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러시아와 관련된 모든 거래는 여전히 매우 중대한 법적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제재를 위반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담보가 제공되지 않으며, Member는 러시아와 관련된 거래에 관여하기 전에 관련 당사자, 화물 및 거래에 대해 철저한 실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IG의 모든 Club이 이와 유사한 내용의 Circular을 발행하였습니다.

추가 정보:

[OFAC Guidance on Implementation of the Price Cap Policy for Crude Oil and Petroleum Products of Russian Federation Origin](#)

[UK Maritime Services Ban and Oil Price Cap Industry Guidance](#)

[EU Guidance on oil price cap: Oil price cap - European Commission](#)

본 번역본은 한국 Member를 위한 참고용으로 작성되었으며, 원본(영문본)이 우선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ANNEX A

Issued to:

Name of P&I Club

Address of P&I Club

VOYAGE PRICE CAP ATTESTATION FOR RUSSIAN ORIGIN OIL AND/OR PETROLEUM PRODUCTS

Vessel:
IMO number:
Load port or place:
Expected place of discharge:
Expected date of loading:
Name of charterers:

1. The Assured represents and warrants that for any provision of services related to the maritime transportation of Russian origin oil or Petroleum Products (as detailed above) by any party entitled to cover such transportation has been, is, and will be in compliance with the price cap policy administered and enforced by the governments of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and its Member States, including their allies and partners such as Japan and Norway. The Assured represents and warrants that it has not taken and will not take any action with the effect or purpose of evading, circumventing, or attempting to violate the price cap policy.

2. The Assured shall provide to the Club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related to compliance with the price cap policy, including any relevant attestation, itemised price information for ancillary costs and proof of reporting provided by a Tier 1 or Tier 2 actor, as quickly as practicable upon request and always within 30 days of the request.

3. In the event the Assured becomes aware of circumstances that provide reasonable cause to suspect that it may have been or may be involved in any activity contrary to the price cap policy, the Assured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Club of such circumstances. The Club may notify relevant authorities of information that provides a reasonable cause to suspect that a violation of the price cap policy has taken place.

4. The Club shall not indemnify an Assured against any liabilities, costs or expenses where the provision of cover, the payment of any claim, or the provision of any benefit in respect of those liabilities, may expose the Club to risk of violation of the price cap policy. In the event the Club determines that a violation of the price cap policy has taken place, the Club may immediately terminate the policy and will have no liability whatsoever under the policy beyond what is permitted by applicable law.

5. The Assured and the Club will retain the executed version of this attestation for five years.

Policy Number(s) or other reference

Insured name

Insured address

Represented by (name)

Position of representative

Signature

Date of signature